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 315 회 임 시 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2025. 10.

이영빈 의원

제 안 설 명 서

제안자: 이 영 빈 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2025년 6월 9일부터 약 4개월간 건전재정확립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달서구의 과도한 공모사업 추진으로 재정 부담을 초래하고, 미흡한 관리 체계로 사업의 실효성마저 불분명한 경우가 많이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 이에 따라 이 조례안은 공모사업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사전타당성을 심의하는 공모사업 사전심의위원회를 두어 구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여 공모를 추진하도록 하고, 종합적 관리를 통해 행정 및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 제6조는 사전검토를 위하여 공모사업 사전심의위원회를 두고, 그 심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7조는 위원회를 의회의 추천을 받은 구의원 3명과 당연직 위원인 국장과 공모사업 총괄부서의 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였습니다.

- 안 제8조는 위원회의 회의 소집 및 의결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는 구청장이 심의대상 공모사업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경우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본 조례안은 사전심의를 통해 공모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달서구 건전재정확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영빈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00925107
----------	----------

발의연월일: 2025. 10. 16.

발 의 자: 이영빈, 황국주, 고명욱
정순옥, 최홍린 권숙자
서보영, 임미연, 장호섭

1. 제안이유

- 공모사업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사전타당성을 심의하는 공모사업 사전심의위원회를 두어 구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여 공모를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행정 및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공모사업의 사전검토를 위하여 공모사업 사전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심의대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나. 위원회를 15명 이내로 하고,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안 제7조)
- 다. 위원회의 회의 소집 및 의결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 라. 심의대상 공모사업 관련예산을 편성할 경우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9조)

3.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0조
- 나. 비용추계서: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제9조로 하고,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공모사업의 사전검토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모사업 사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심의한다.

1. 대구광역시 달서구가 신청한 국비·시비 등이 포함된 공모사업으로 구비 1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
2. 민간이 구청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시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구비 5천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국장, 공모사업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의회 의원 3명

2. 지방재정에 대한 전문성이 충분한 교수 등 전문가 3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회 의원은 임기가 종료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8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으로부터 회의 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모사업을 총괄하는 부서의 업무담당 팀장을 간사로 둔다.

제9조제1항(중전의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구청장은 제6조제2항 각 호의 공모사업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u> <u>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공모사업의 사전검토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모사업 사전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 <u>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심의한다.</u> <u>1. 대구광역시 달서구가 신청한 국비·시비 등이 포함된 공모사업으로 구비 1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u> <u>2. 민간이 구청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시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구비 5천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u></p>
<p><u><신 설></u></p>	<p><u>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u> <u>② 당연직 위원은 국장, 공모사업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u></p>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의회 의원 3명

2. 지방재정에 대한 전문성이 충분한 교수 등 전문가 3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회 의원은 임기가 종료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신 설>

제8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으로부터 회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소집이 불가

제6조(의회보고)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공모사업 관련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보고해야 한다.

1. 구가 신청하는 국비·시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구비 1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

2. 민간이 구청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시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구비 5천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

② (생략)

능할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모사업을 총괄하는 부서의 업무담당 팀장을 간사로 둔다.

제9조(의회보고) ① 구청장은 제6조제2항 각 호의 공모사업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